

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69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5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4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폐지사유

-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고 신규채용도 없어 불필요한 규제 정비대상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폐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
○ 2단계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현행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이 1명도 없고 앞으로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3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